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일정 등 공고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과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다만, 시험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.

2022년 12월 20일
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

| 구 분 (직렬) | 시험공고 | 원서접수 | 필기시험 | 면접시험 | 최종발표 |
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제1회 임용시험 (8·9급 전직렬 등) ※ 운전직류 포함 | '23. 2. 15.(수) | 3. 13.(월) ~ 3. 17.(금) | 6. 10.(토) | 8. 9.(수) ~ 8. 18.(금) | 9. 6.(수) |
| 제2회 임용시험 (7급 전직렬, 연구·지도직, 기술계 고졸(예정)자 등) | '23. 6. 14.(수) | 7. 17.(월) ~ 7. 21.(금) | 10. 28.(토) | 12. 6.(수) ~12. 15.(금) | 12. 29.(금) |

※ 임용예정 직렬 및 선발예정 인원 등을 포함한 상세한 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local.gosi.go.kr),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,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(hrd.seoul.go.kr)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시험이므로,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원서접수가 가능(중복접수 불가) 하며, 일부 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합니다.

붙임 :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1부.

붙임.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

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<2023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>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을 포함한 시행계획 공고는 시험별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,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,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(<http://hrd.seoul.go.kr>)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.

이번에 공지하는 시험제도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,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임용시험별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부터 적용

○ 기술계 고졸(예정)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

| 기 존 | 변 경 |
|--|--|
|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·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- 졸업예정자: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(2023년의 경우) |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·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- 졸업예정자 :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(2023년의 경우) - <u>졸업자 :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</u> |

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(7급 공채시험)

| 기 존 | 변 경 |
|--------------|---|
| 성적 인정기간 : 5년 | 성적 인정기간 : 없음 단,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|

○ 일부 직렬 응시요건(자격증) 정비

<해양수산직렬> (대상직류 : 일반선박, 선박항해, 선박기관)

- 6·7급 응시요건 기준에 '산업기사' 추가

| 직류 | 계급 | 현 행 | 개 정 |
|------|----------|--|--|
| 일반선박 | 6·7 급 | 기술사(기계, 산업기계설비, 조선) 기 사(일반기계, 조선)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| 기 술 사(기계, 산업기계설비, 조선) 기 사(일반기계, 조선) <u>산업기사(컴퓨터응용가공, 조선)</u>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|
| 선박항해 | | 기술사(조선) 기 사(조선, 항로표지) 항해사1급 내지 4급 | → 기 술 사(조선) 기 사(조선, 항로표지) <u>산업기사(조선, 항로표지)</u> 항해사1급 내지 4급 |
| 선박기관 | | 기술사(기계, 산업기계설비, 조선) 기 사(일반기계) 기관사1급 내지 4급 | 기 술 사(기계, 산업기계설비, 조선) 기 사(일반기계) <u>산업기사(컴퓨터응용가공)</u> 기관사1급 내지 4급 |

<항공직렬> (대상직류 : 일반항공, 조종, 정비)

- 6·7급 응시요건 기준에 ‘산업기사’ 및 ‘자가용조종사’ 추가

| 직류 | 계급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|------|--|---|
| 일반 항공 | 6·7급 | 기술사(항공기관, 항공기체) 기사(항공) 운송용조종사, 사업용조종사, 항공사, 항공기관사, 항공교통 관제사, 항공정비사, 항공공장 정비사, 운항관리사 | 기술사(항공기관, 항공기체) 기사(항공) 산업기사(항공) 운송용조종사, 사업용조종사, 항공사, 항공기 관사, 항공교통관제사, 항공정비사, 항공공장 정비사, 운항관리사, 자가용조종사 |
| | | 운송용조종사, 사업용조종사, 항공사 | 운송용조종사, 사업용조종사, 항공사, 자가용조종사, |
| | | 기술사(항공기관, 항공기체) 기사(항공) 항공정비사, 항공공장정비사, 항공기관사 | 기술사(항공기관, 항공기체) 기사(항공) 산업기사(항공) 항공정비사, 항공공장정비사, 항공기관사 |

<시설직렬> (대상직류 : 지적)

- 6·7급 응시요건 기준에 ‘산업기사’ 및 8·9급 기준에 ‘기능사’ 추가

- 응시요건 자격증 종류(‘측량 및 지형공간정보’ 기술사·기사·산업기사 및 ‘측량’·‘지도제작’·
‘도화’·‘항공사진’ 기능사)를 직급별로 추가

| 직류 | 계급 | 현행 | 개정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지적 | 5급 이상 | 기술사(지적) 기사(지적) | 기술사(지적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) 기사(지적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) |
| | 6·7급 | 기술사(지적) 기사(지적) | 기술사(지적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) 기사(지적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) 산업기사(지적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) |
| | 8·9급 | 기술사(지적) 기사(지적) 산업기사(지적) | 기술사(지적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) 기사(지적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) 산업기사(지적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) 기능사(측량, 지도제작, 도화, 항공사진, 지적) |

<조리직렬> (대상직류 : 조리)

- 6·7급 응시요건 기준에 '산업기사' 및 8·9급 기준에 '기능사' 추가

| 직류 | 계급 | 현행 | 개정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조리 | 6·7급 | 조리기능장 | 조리기능장 <u>조리산업기사(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, 복어)</u> |
| | 8·9급 |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(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, 복어) | →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(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, 복어) <u>조리기능사(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, 복어)</u> |

2024년부터 적용

○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

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 | - <u>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</u> |

○ '전산직렬'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

-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삭제

| | 기존 | 변경 |
|------|--|------|
| 6·7급 | 기술사(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) 기사(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) | <삭제> |
| 8·9급 | 기술사(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) 기사(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) 산업기사(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,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) | <삭제> |

○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전환

| 직류 | 직류 |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|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|
|----|-----|---|---|
| 전산 | 전산 | 기술사 (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) 기사 (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 응용, 정보보안, 빅데이터분석) | ※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: 멀티미디어콘텐 츠제작전문가 |
| | 데이터 | 산업기사 (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) 기능사 (정보기기운용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) | |

○ 기술계고 고졸(예정)자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

-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선발예정직렬(직류)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이 50% 이상이어야 함